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직혁

전화 033-740-4401/팩스 033-240-4640

보도자료

2024. 7. 19.(금)

자녀를 학대한 아동학대 사범 구속 기소 및 친권상실 청구 등 피해아동 보호·지원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제11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7. 12.(금)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제한'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인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피해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금일(7. 19.)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춘천지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해** 오며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춘천지검은 **강원도 교육청, 춘천시 교육지원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등 **입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예비적으로 교육 등에 대한 친권제한) 청구**를 하였고,
 - 피해아동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로 야기된 심리문제의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병원형 Wee센터' 입소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춘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1] 피고인

- A○○(52세, 피해아동 친모)

2] 공소사실의 요지

- '24. 4. 12. 20:00경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익일 04:00경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4권의 책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피고인은 2023. 7.경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를 별도 인지하여 아동 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과 병합 기소하였음

3] 사건경과

- '24. 6. 24. 춘천경찰서, 구속송치
- '24. 6. 25. 당청, 장기간 학대정황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심리적 문제 발견 후 구체적인 피해상황 확인을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강원대병원 정신감정 의뢰
- '24. 7. 2.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피해아동 임상심리평가 진행
- '24. 7. 3. 강원대병원(교수 황OO), 피해아동 정신감정 진행
- '24. 7. 5. 당청, 사건관리회의 개최 및 유관기관 의견서 요청
- ※ 강원도 교육청, 춘천시 교육지원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강원대학교병원,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9개 유관기관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여 피해아동 보호방안 논의
- '24. 7. 9.~10. 당청, 대검 임상심리평가 결과 및 유관기관 의견서 회신
- '24. 7. 12. 당청, 피고인의 무고 2건 병합하여 구속기소
- '24. 7. 19. 당청, 친권상실(예비적으로 친권제한) 청구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① 기초 사실

- 검찰은 피해아동에 임상심리평가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결과,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2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시키는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아동이 5세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신체학대를 하였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2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피해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홈스쿨링을 시킨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음

② 사건관리회의 내용

-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청, 춘천시 교육지원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였고,
 - 논의 결과 피해아동의 신체·정서에 대한 오랜 학대로 피해아동의 심리치료가 절실한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강력히 희망하는 점 등 고려 친권상실(예비적으로 교육 등에 대한 친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고,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관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음
- 또한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그 경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강원대병원, 춘천시청,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과 매달 정례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양육방향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③ 친권 상실(예비적 친권 제한)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 검찰은 피해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하였고, 친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친권상실 기각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함

【친권 정지·제한 제도】

· 종전에는 친권 상실 제도만 존재하였으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행사가 있어도 국가가 개입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민법 개정('14년)으로 친권 정지 및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음

종전 민법	개정 민법	친권 남용 정도에 상응하는 개입 가능
친권상실 (부모 자녀 관계의 종국적 단절)	친권상실(924조)	부모 자녀 관계의 종국적 단절
	친권정지(924조)	2년 이내 친권정지, 후견인 선임
	친권제한(924조의2)	특정행위만 친권제한, 후견인 선임

- 또한, 피해아동의 학교 복귀를 위해 아동학대로 야기된 피해아동의 심리적 문제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였음

※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민법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3 향후 계획

-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